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직제규정」			
입안형태	□ 제 정		▣ 개 정	□ 폐 지
소관부서	교원인사팀	관련부서	기획예산팀	
부서간 협의 결과	• 특이사항 없음			
대학평의회	• 해당사항 없음	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• 약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평가·인증 관련 학과에 ‘약학’ 추가	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• 약사법 제3조 제2항 제1호			
주요내용 (제개정내용)	• 평가·인증을 받는 학과에 ‘약학’ 을 추가하여 약학대학 학장의 업무 총괄 및 소속 교원 지휘 감독 권한 부여			
기대효과	• 약학교육 평가인증 업무 수행	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치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	해당사항 없음() 해당사항 있음(○)		
	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 (포털 및 홈페이지)	해당사항 없음() 해당사항 있음(○)		
	다. 의견제출 유무	반영 예정		
	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반영 예정		
첨부자료	1. 「직제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 2. 약사법 제3조 1부. 3. 약학교육 평가인증 편람 1부.			

「직제규정」 개정(안) 산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13조(대학원장,학장) ①대학원에 대학원장을, 단과 대학에 학장을 둔다. (개정 2018.12.6.) ②대학원장과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. (개정 2018.12.6.) ③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총괄하고 대학원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(개정 2015.3.31., 2018.12.6., 2022.12.28.) ④고등교육법 제11조의2(평가 등)에 따라 <u>한의학</u> 또는 <u>간호학</u>에 대한 평가·인증을 받는 각 학과(부)의 학장은 소속 학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원을 지휘 감독한다. (개정 2022.12.28.)	제13조(대학원장,학장) ①대학원에 대학원장을, 단과 대학에 학장을 둔다. (개정 2018.12.6.) ②대학원장과 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. (개정 2018.12.6.) ③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의 교무를 총괄하고 대학원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(개정 2015.3.31., 2018.12.6., 2022.12.28.) ④고등교육법 제11조의2(평가 등)에 따라 <u>한의학, 간호학 또는 약학</u>에 대한 평가·인증을 받는 각 학과(부)의 학장은 소속 학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원을 지휘 감독한다. (개정 2022.12.28.)
(신설)	<u>부 칙(학교법인우석학원-000(2023.00.00)호)</u> <u>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